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한병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68

발의연월일: 2024. 6. 21.

발 의 자:한병도·조 국·이기헌

윤준병 • 위성락 • 위성곤

진선미 • 박정현 • 김한규

정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 중 피해 아동이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, 미등록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.

특히 10대 산모나 미혼모, 병원 외 장소 등 취약 환경에서 출생하여 가정법원을 통해 출생신고를 해야 할 경우, 절차가 복잡하고 유전자검사비용 등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생확인 신청과 출생확인 과정에서 필요한 유전자검사비용 등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(안 제17조).

법률 제 호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5호 중 "청구 등을"을 "청구, 출생확인신청 등을"로, "소송대리 등"을 "소송대리, 유전자검사비용지원 등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가족지원서비스) 국가나	제17조(가족지원서비스)
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	
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	
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	
한다.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<u>청</u>	5 <u>청</u>
<u>구 등을</u> 위한 법률상담, <u>소송</u>	구, 출생확인신청 등을
<u>대리 등</u> 법률구조서비스	소송대리, 유전자검사비용지
	<u>원 등</u>
6. (생략)	6. (현행과 같음)